



1. 국내 중소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실태 확인

- X회사는 최근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하여 매출이 급성장한 '중소기업'이고, 전세계에서 Flexible OLED 패널 공정장비를 대량생산하는 기업은 X회사 포함 국내 기업들뿐임
- 중국 Y회사는 Flexible OLED 패널 공정장비 제작 기술·경험이 없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진입 위해 X회사의 설계팀장 A○○ 등을 영입함
- A○○는 이직 전 중국에 있는 Y회사 본사를 방문, X회사의 장비들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M공정장비의 향후 제작 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직 시 X회사의 M공정장비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한 후, 그 도면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중국 Y회사 본사에 전송, Y회사는 전송받은 설계도면으로 X회사 장비와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었음
- B○○는 X회사의 N공정장비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X회사 설계팀 서버에 저장된 다른 장비들의 설계도면을 다수 내려받아 무단반출함
- A○○ 등이 M공정장비에 이어 N공정장비도 제작 계획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X회사의 주요 장비 대부분을 제작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남

2. 국내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 확인

- 국내 중소기업은 열악한 자금 상황 등으로 인해 핵심 직원에 대한 처우와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등이 취약함
 - 중국 Y회사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X회사 연봉의 2배 이상의 연봉과 한국지사장 자리를 미끼로 A○○를 영입
 - A○○는 X회사의 취약한 영업비밀 관리 상황을 이용하여 M공정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무단 반출

- 중국 Y회사는 X회사 설계도면을 도용함으로써 절약한 시간·비용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 부품비용 등을 바탕으로, X회사가 수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제작한 M공정장비를 수개월 만에 제작하여 다른 아닌 X회사의 고객사인 중국 Z회사에 납품할 계획이었음
-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은 핵심 인력·기술 유출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기술 유출 시에는 고객사를 모두 잃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확인

3. 관계기관 공조로 추가적인 기술 유출 차단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함 ■

첨부: 수원지검 수사결과 보도자료

기술유출, 업무상배임, 경업금지, 전직금지, 영업비밀, 형사고소, 민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